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기 관 명<br>(부 서 명) | 여성가족부<br>(권익침해방지과) |
| 연 월 일            | 2021. 5 . .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개정이유

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허위영상물이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895호, 2021. 1. 12. 공포, 7. 1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또한,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‘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’과 ‘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’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’과 ‘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’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(안 제2조의3)
- 나.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법 제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로 확대(안 제2조의6 1항)
- 다.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대리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건 규정 마련(안 제2조의6 3항)
- 라.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피해정보의 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(안 제2조의6 4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‘21.5.11~‘21.6.19.

3) 행정규제 심사 : 비대상

##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6 제1항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는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.

제2조의6 제1항 중 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”을 “법 제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”으로 하고, “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”를 삭제한다.

제2조의6 제1항 제2호 중 “수집”을 “수집 및 보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6 제3항 중 “제1항의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”을 “법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”로 하고, “또는 형제자매는”를 “,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6 제3항 2호 중 “피해를 입은 사람은”을 “지원 대상자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의6 제3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대리인에 한한다.)

제2조의6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여성가족부 장관(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)은 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촬영물 등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하되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영구보존한다. 다만,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

제2조의6 “제4항”은 “제5항”으로, 제4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“제5항”은 “제6항”으로 제5항 중 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③ 제1항의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,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촬영물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
(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)

<신설>

<신설>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

③ 법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, -----  
-----,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(지원 대상자는 -----)

3.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대리인에 한한다.)

④ 여성가족부 장관(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)은 법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촬영물 등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하되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영구보존한다. 다만,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

⑤ -----  
제4항에 -----  
-----  
--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<br/>통지하여야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<br/>력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<br/>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<br/>여야 한다.</p> | <p>⑥ 제5항에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2) 2100 - 6162 |